

# 2023년 제1회 예천군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3년 제1회 예천군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3년 11월 29일

예천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분야	직급	인원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무내용
정책지원관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의회사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안 심의·결산 승인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li> <li>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li> <li>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li> <li>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li> <li>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li> <li>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li> <li>그 밖에 사무 분장에 따라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li> </ul>

※근무 실적 등에 따라 최초 근무기간을 포함,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2.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3. 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지역·성별: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국적: 대한민국(외국인이 아닌 사람)
- 응시연령: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 ⑥ (생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이하 생략)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나.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분야	직급	자격 요건
정책지원관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p>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ul> <p><b>관련분야 실무경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포함),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사(deaney.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연구소, 기업체, 대학교(부설 연구기관 포함),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b>행정, 입법, 법무, 정책, 기획, 예산, 재정 분석, 결산, 감사 및 조사</b> 관련 실무경력*</li> </ul> <p>*<b>권한과 책임이 분명한 담당자급 이상</b> 경력을 인정하고, 사무보조, 행정보조, 연구보조, 단순노무 등 단순 업무와 대학 학위 취득 과정은 경력 불인정</p>

※ 관련분야 실무경력: 경력(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급(직위)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관련분야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주 40시간 기준)

(예) 2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경력 ⇨ 경력 1년으로 인정

##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관련 규정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직 급	상 한 액	하 한 액	근 무 시 간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64,776천원	<b>46,006천원</b>	주 40시간(09:00~18:00)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5. 시험 일정 및 방법

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2023. 11. 29.(수) ~ 12. 15.(금), 16일간	2023. 12. 13.(수) ~ 12. 15.(금), 3일간	2023. 12. 22.(금)	2024. 1. 3.(수)	2024. 1. 10.(수)

※합격자 발표: 예천군의회 홈페이지([www.ycgcl.kr](http://www.ycgcl.kr)) 내 '의정활동-공지사항' 에 공고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 ○ 시험방법

####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개별 면접을 통해 공직관, 전문성, 자질 등 업무 역량 종합 평가
- 평정요소에 따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중·하로 평정

####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최종합격자 발표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 (불합격 기준) 면접위원 과반이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 "하"로 평정한 경우, 면접위원 과반이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6. 응시원서 접수

- 원서교부: 공고문 첨부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2023. 12. 13.(수) ~ 12. 15.(금), 3일간
- 접수 및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팩스, 전자우편 불가)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09:00~18:00에만 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처: (우36826)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054-650-6404)

###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에 예천군 수입증지를 날인하여 제출하고,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7,000원)를 우체국통상환증서로 동봉
- 등기우편 접수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우편 발송 후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예천군의회 인사담당자에게 유선 확인 필요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2023년 제1회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표기
- 퀵서비스, 택배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미비한 서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7. 응시자 제출서류

-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② 응시원서(별지 서식 1) 1부
  - 응시수수료 : 7,000원(예천군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응시원서에 수입증지 발급·날인)
- ③ 이력서(별지 서식 2)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학력 및 경력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④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3) 1부
-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서식 4) 1부
- 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서식 5) 1부

- ⑦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서식 6)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며, 남자인 경우 병역 사항 포함하여 제출
- ⑧ 경력(재직)증명서(별지 서식 7) 1부.
  -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직급),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시간제 근무 경력은 반드시 주(週)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 받은 후 원본과 함께 제출
  -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경력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증명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 ⑨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민간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
- ⑩ 응시자격요건 본인 확인서 1부(별지 서식 8)
- ⑪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서식 9)
- ⑫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학사), 대학원 모두 제출
- ⑬ 응시 분야 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 원본 지참

## 8. 재공고 사전 안내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하며, 당초 응시자의 경우 추가 접수 없이 기존 접수 효력이 인정됩니다.

## 9.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관련 중요 사항의 미확인, 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응시서류 기재사항, 시험 일정 및 합격 여부를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결정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합니다. (방문 수령만 가능)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에라도 신원조회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에 예천군의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문의사항 사항은 예천군의회 의회사무과(☎054-650-6404)로 연락 바랍니다.